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19년 6월 5일

나. 발 의 자: 장순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9. 6.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장순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도중 일탈이 언론 보도되어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가 있음.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표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법규형식을 훈령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함 (제명 등)

-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제5호)
- 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 (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의원 배제)
 - 법조계, 언론계 출신도 포함하여 구성
-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세분화 (안 제6조 및 별표)
- 의결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 (안 제9조)
-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규정 신설 (안 제11조)
 -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출장, 동시지방선거 해에 선거일 전 출장, 출장 중 물의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출장 제한
 - 부당지출 경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
-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30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획서를 공개 하도록 규정 (안 제12조)
-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상임위) 보고 의무 (안 제13조)
-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명시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명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에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6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고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의회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명의 출장,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부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출장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진제도 체험과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국외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지방의회 의원외교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효율성·효과성이 제고되고 구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의회 국외출장 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일부 수정함.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19. 6. 18.

제안자 : 오현숙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지방의회 국외출장 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일부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1호를 “의원”으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2호를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3호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중 제4호를 신설하여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부칙안 중 안 제3조 중 “의원인 위원과”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1호를 “의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 제2호를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안 제3호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제4호를 신설하여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안 중 안 제3조 중 “의원인 위원과”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u>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u> 2. <u>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3. <u>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 연수 관련 전문가</u> 제4호 신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 <u>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u> 3. <u>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4. <u>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u>
부칙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u>의원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u>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u>의회사무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국외교육연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출장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최하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

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그 선거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의회사무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위	성명	성 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 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 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명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 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3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장순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
----------	-----

발의년월일 : 2019년 6월 일

발 의 자 : 장순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도중 일탈이 언론 보도되어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바가 있음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 표준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법규형식을 훈령에서 조례로 격상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함 (제명 등)

-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출장”

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제1호~제2호, 제4호~제5호)

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변경 (안 제5조)

-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의원 배제)

- 법조계, 언론계 출신도 포함하여 구성

라.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세분화 (안 제6조 및 별표)

마. 의결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 (안 제9조)

바. 출장의 제한사유 및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규정 신설 (안 제11조)

-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명 출장, 동시지방선거 해에 선거일 전 출장, 출장 중 물의로 징계받은 경우에는 출장 제한

- 부당지출 경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
- 사.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출국 30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안 제12조)
- 아.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상임위) 보고 의무 (안 제13조)
- 자.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명시 (안 제14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제43조
- 나. 관계부서 : 의회사무국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입법예고 : 2019. 6. 4. ~ 2019. 6. 10.
- 마. 첨부자료 : 신구조문대비표(종전 규정과 조례제정안 비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교육계·법조계·언론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외교육 연수 관련 전문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출장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개최하며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해촉을 건의한 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그 선거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

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종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의원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